

# 스승의날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Q&A

스승의날 관련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Q1. 학생이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?

A.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·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,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(학생회)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(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).

다만, **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대표 등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간단한 카네이션,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 경위,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**

## Q2.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?

A.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·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, **학생들이 비용을 모아 선물·기프티콘·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.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대표가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꽃을 제외한 선물은 불가합니다.**

## Q3. 학생이 교수님께 편지를 드려도 되나요?

A.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

## Q4. 학부모가 교수 또는 교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?

A. 학부모와 교직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제한됩니다.

## Q5. 기프티콘도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하나요?

A. 네. 모바일 상품권·기프티콘 등도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## Q6. 학부 졸업생이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?(현재 해당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재직)

A.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

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,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(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, 제2항),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일반적으로 교수와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, 사안과 같이 졸업생이 교수의 보조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,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,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,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의 목적에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(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의 경우 10만원)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(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1]).

### Q7. 졸업생이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?(현재 전공 무관한 사기업 재직)

A.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-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,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,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, 금품등의 다과,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,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.

- 한편,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,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(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)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(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).

-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,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, 수수 경위와 시기,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, 감사·평가·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

### Q8. 학생이 시간강사에게 선물제공이 가능한가요?

A. 대학의 시간강사도 「고등교육법」상 교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(19.8.1).

따라서 전임교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
**Q9. 스승의날 겸임교원에게 얼마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한가요?**

A.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르면, “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·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”고 되어 있는바, 교원 외인 “명예교수·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”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
이에 따라, 만약 해당 겸임교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동법상 금품등 수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.

※ 참고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집 및 유권해석 기준